

투자자문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4.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 2 조의2 (적합성 원칙)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 11조(적합성원칙)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4, 5, 6, 7>과 같다.

제 2 조의3 (적정성 원칙)

①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 교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4, 5, 6, 7>과 같다.

제 2 조의4 (설명 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시행령 제13조(설명 의무) 제2항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나. 계약의 해지·해제
 - 다.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 라. 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 마. 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성 바.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6.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제 4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⑤ 고객이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⑥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2>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 2.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2>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3. 성과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4.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2>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

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2>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자문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제 14 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그 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제 14 조의3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6.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1. 회사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2.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3. 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반환금액을 정한다.

제 16 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2(투자광고)

- ①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3. 투자에 따른 위험
 -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 4.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6.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7.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 9.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1. 손실보전(損失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정하는 행위

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1>

<투자자문담당자>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한범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현)코리아자산운용 이사 (전)IBK투자증권 차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사항>

①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상근여부	담당업무
대표이사	박용우	(현)코리아자산운용 대표이사 (전)IBK투자증권 종합금융1부장	예	경영 총괄
사내이사	정지훈	(현)코리아자산운용 경영지원실장 (전)코리아신탁 차장	예	경영지원 총괄
기타비상무이사	백인균	(현)코리아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전)코리아신탁 대표이사	아니오	이사회 의장
기타비상무이사	한일영	(현)코리아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현)코리아신탁 기획실장	아니오	이사회 위원
감사	박일용	(현)코리아자산운용 비상근 감사 (현)코리아신탁 재무회계실장	아니오	감사

* 회사의 임원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소유주식수 및 비율	비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00,000주 / 100%	최대주주

* 회사의 주주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별지 2>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원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재산 원본의 연 %(부가세포함) : 원
 - 성과수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자문담당자 :
6. 거래증권회사 계좌
 - 거래증권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
 - 주문담당자 E-Mail :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8.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별지 3>

수수료 부과기준표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되는 전체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다.(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객과 합의에 따라 부과한다.)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구분
투자자문계약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 연 1.5%	선취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

* 기준수익률 = COFIX(신규취급액기준) + 2%p (기간: 1년)

- ① 성과보수의 지급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의 20% 이내로 한다.
- ② 높은 투자위험 노출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③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부의 수익률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성과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시에는 기준수익률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별지 4>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재산상황	1.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초과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3.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1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초과
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p><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5.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p> <p>*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투자목적 (거래목적)</p>	<p>6.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8.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9.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p> <p>10. 기대이익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p>

<p>금융투자 상품 운용계획</p>	<p>11. 금융투자상품 운용계획 <input type="checkbox"/> 축소 예정 <input type="checkbox"/> 현행수준 유지 예정 <input type="checkbox"/> 확대 예정</p>
<p>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계약기간)</p>	<p>12. 투자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p>
<p>연령</p>	<p>13. 연령 <input type="checkbox"/> 2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0세 <input type="checkbox"/> 30세~50세 <input type="checkbox"/> 50세~65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p>
<p>취약투자자 여부</p>	<p>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p>

<투자자성향 분류>

<p>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	--

	<p><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p> <p>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함)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별지 5>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항목	①	②	③	④	⑤	비고
1번	1점	2점	3점	4점	-	
2번	3점	2점	1점	-	-	
3번	1점	2점	3점	4점	5점	
4번	1점	2점	3점	4점	5점	복수답안가능
5번	1점	2점	3점	4점	5점	
6번	5점	4점	3점	2점	1점	
7번	1점	2점	3점	-	-	
8번	1점	2점	3점	4점		
9번	1점	2점	3점	4점	-	
10번	1점	2점	3점	4점	-	
11번	1점	2점	3점	-	-	
12번	1점	2점	3점	4점	5점	
13번	5점	4점	3점	2점	1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3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0번까지의 합이 40점인 경우, $40\text{점}/55\text{점} \times 100 = 72.7\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6>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채 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A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ELW	ELW					
주식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주식				
집합투자증권	레버리지 파생결합증권	주식형 파생상품	혼합형		채권형	MMF	
		97.5% VaR 60% 초과	97.5% VaR 60% 이하	97.5% VaR 40% 이하	97.5% VaR 20% 이하	97.5% VaR 10% 이하	97.5% VaR 1% 이하
선물옵션		선물옵션					

- * ELW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매우높은위험 분류
-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산정한 VaR 기준으로 분류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별지 7>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가 매분기 실시하는 매분기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시, 본인이 그 변경 여부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 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2024.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담당직원 성명 :	서명/인

투자 권유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자본시장법 제 97조(계약의 체결), 동법 시행령 제 98조(계약의 체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등에 의거,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받는 서면자료를 **교부 받았음**과 그 자료를 통하여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

투자일임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해 투자일임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2]에 따른다.

제3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 및 출자지분 등
2.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기업어음(CP)의 경우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7.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의 KOSPI200 선물 및 옵션 / 미니선물 및 옵션
8. 해외투자 (해외 파생상품)
9.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3조의2(적합성 원칙)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의 정

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4, 5, 6, 7>과 같다.

제3조의3(적정성 원칙)

- ①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제2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바.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 교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4, 5, 6, 7>과 같다.

제3조의4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2항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나. 계약의 해지·해제
 - 다.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 라. 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 마. 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성 바.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 업무

제5조(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투자일임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서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고객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한다.

제6조(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별지2〕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② 기본수수료는〔별지2〕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별지2〕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③ 성과수수료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

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성과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성과보수의 지급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의 20% 이내로 한다. (기준수익률 = COFIX(신규취급액기준) + 2%p (기간: 1년))
 - 나. 높은 투자위험 노출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다.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부의 수익률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마. 성과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 시에는 기준수익률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2)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내용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동의하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9조(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2>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제14조의2(투자일임재산 운용 시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로 정하는 행위

제14조의3(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그 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제14조의4(부당권유행위의 금지)

회사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6.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1. 회사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2.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3. 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제15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계약의 유효기간)

-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2]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반환금액을 정한다.

제18조(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에 재산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해지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현금 평가금액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만 보유했다면 현금 평가금액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청산 가능한 현실적인 시장 가격으로 청산하였을 때 현금 평가금액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정당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에 적합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또는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 ③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산입한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2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투자광고)

①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4.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8.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손실보전(損失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별지1】

<투자일임담당자>

고객의 투자일임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일임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맹주완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 학사 (현)코리아자산운용 이사 (전)코레이트자산운용 부장	증권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상품)
장동민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 학사 (현)코리아자산운용 대리 (전)브라이트자산운용 대리	증권운용전문인력 (금융투자상품)

* 회사의 투자일임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사항>

①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주요경력	상근여부	담당업무
대표이사	박용우	(현)코리아자산운용 대표이사 (전)IBK투자증권 종합금융1부장	예	경영 총괄
사내이사	정지훈	(현)코리아자산운용 경영지원실장 (전)코리아신탁 차장	예	경영지원 총괄
기타비상무이사	백인균	(현)코리아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전)코리아신탁 대표이사	아니오	이사회 의장
기타비상무이사	한일영	(현)코리아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현)코리아신탁 기획실장	아니오	이사회 위원
감사	박일용	(현)코리아자산운용 비상근 감사 (현)코리아신탁 재무회계실장	아니오	감사

* 회사의 임원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소유주식수 및 비율	비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00,000주 / 100%	최대주주

* 회사의 주주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별지2】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투자일임재산 :
3.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수수료 :
 - 성과수수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지급 시기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일임담당자 :
6. 거래증권사 및 계좌
 - 증권사 :
 - 계좌번호 :
7.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우편 또는 E-mail 등 선택 가능)
 - 투자일임보고서 등의 수령 방법 : 우편 E-mail 그 밖의 방법()
 - 주소 :
 - 전화 :
 - E-mail :
8. 기타 합의 사항
 - 중도해지 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5영업일 이내 반환함
 - 제21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연 %를 지급한다.

【별지3】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의거하여 투자일임 수수료의 계산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수료율)

1.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나눈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1%로 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재계약에 대한 운용보수는 최초 자본계약(Capital Commitment)에 기초한다.
3. 성과수수료는 Hudle Rate(신규취급액 기준 COFIX +2%p)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를 적용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기존의 손실을 만회한 이후의 자본계약에 기초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증액 및 감액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수익률은 값이 음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 수수료율 기준

계약금액	운용 수수료	성과 수수료
고객 일임자산	연 1%	Hudle rate 초과분의 20%

* Hudle rate(기준수익률) = COFIX(신규취급액기준) + 2%p (기간: 1년)

- ① 성과보수의 지급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의 20% 이내로 한다.
- ② 높은 투자위험 노출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③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성과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 시에는 기준수익률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 3 조(투자일임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투자일임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연장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고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해지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계산 X 1% X (운용일수 / 365)]

4. 성과수수료 발생 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후취 일시납으로 하며 투자일임계약 일부.전부 해지시점,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평가자산의 계산)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매도가격 평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한다.
2. 기타자산: 고객과 합의된 가격
3. 미실현이익의 평가
 - 1)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모주 등)는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 2)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3) 주식배당, 유.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제 5 조(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

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제 6 조(기준의 변경)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지4】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재산상황	1.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7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초과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3.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1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초과
	4.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50%이하 <input type="checkbox"/> 50% 초과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경험</p>	<p>5.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p> <p><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6.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p><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p>
	<p>*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목적</p>	<p>7. 투자목적</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p>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8.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9. 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10.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p> <p>11. 기대이익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5%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p>
<p>투자 예정기간</p>	<p>12. 투자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p>
<p>연령</p>	<p>13. 연령 <input type="checkbox"/> 2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30세 <input type="checkbox"/> 30세~50세 <input type="checkbox"/> 50세~65세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p>
<p>취약투자자 여부</p>	<p>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투자자성향 분류>

<p>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별지5】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항목	①	②	③	④	⑤	비고
1번	1점	2점	3점	4점	5점	
2번	3점	2점	1점	-	-	
3번	1점	2점	3점	4점	5점	
4번	5점	4점	3점	2점	1점	
5번	1점	2점	3점	4점	5점	
6번	1점	2점	3점	4점	5점	
7번	5점	4점	3점	2점	1점	
8번	1점	2점	3점	-	-	
9번	1점	2점	3점	4점	-	
10번	1점	2점	3점	4점	-	
11번	1점	2점	3점	4점	-	
12번	1점	2점	3점	4점	5점	
13번	5점	4점	3점	2점	5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3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8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3번까지의 합이 40점인 경우, $40\text{점}/58\text{점} \times 100 = 68.97\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6】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채 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A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ELW	ELW					
주식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주식				
집합투자증권	레버리지 파생결합증권	주식형 파생상품	혼합형		채권형	MMF	
		97.5% VaR 60% 초과	97.5% VaR 60% 이하	97.5% VaR 40% 이하	97.5% VaR 20% 이하	97.5% VaR 10% 이하	97.5% VaR 1% 이하
선물옵션		선물옵션					

- * ELW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매우높은위험 분류
-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산정한 VaR 기준으로 분류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별지7】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가 매분기 실시하는 매분기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시, 본인이 그 변경 여부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 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2024.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담당직원 성명 : 서명/인

투자 권유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받는 서면자료를 교부 받았음과 그 자료를 통하여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